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5316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홍성필, 이선영, 최단비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23. 1. 10.

판결 선고2023. 2. 14.

주 문

- 가. F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756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3,600,204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G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756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3,600,204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다. H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378 지분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9,766,866원과 그중 7,200,409원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66,866원과 그중 7,200,409원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2의 가항 기재 돈 중 10,819,52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광주가정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시가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따르면, F, G,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미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의 조부모이자 피고 C의 부모인 고 I, J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고인들의 장남이자 피고 D의 아버지인 K가 실제

소유자였는데 상속등기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H가 일부 지분을 등기하게 되었을 뿐 H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H가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가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K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채무자들 지분 가액과 변론종결일인 2023. 1. 10.까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D은 수익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 가액(114,462,143원), 피담보채권액(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F, G, H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큰 H에 대한 피보전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의 F, G에 대한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F, G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가액의 합계인 10,819,526원(F 5,409,763원 + G 5,409,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20. 8. 28. 멸실되어 피고 C에게는 현존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E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고, 당시 가액이 67,045,585원으로 감정평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F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756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3,600,204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G와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756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의 G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3,600,204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H와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1/378 지분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의 H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9,766,866원과 그중 7,200,409원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H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9,766,866원과 그중 7,200,409원에 대하여 1998. 3. 3.부터 2005. 3. 2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0.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10,819,52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조규설

별지